

이사회 규정

| | | | |
|----|-------|-----|-----|
| 제정 | 2001년 | 4월 | 2일 |
| 개정 | 2003년 | 3월 | 10일 |
| 개정 | 2004년 | 3월 | 17일 |
| 개정 | 2006년 | 3월 | 9일 |
| 개정 | 2010년 | 3월 | 19일 |
| 개정 | 2012년 | 3월 | 16일 |
| 개정 | 2014년 | 5월 | 23일 |
| 개정 | 2017년 | 7월 | 18일 |
| 개정 | 2020년 | 1월 | 31일 |
| 개정 | 2021년 | 4월 | 28일 |
| 개정 | 2022년 | 2월 | 8일 |
| 개정 | 2025년 | 11월 | 27일 |
| 개정 | 2026년 | 3월 | 31일 |

주식회사 엘지화학

제 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엘지화학 이사회(이하 '이사회'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본 규정 제14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
- ② 의장이 결원 또는 유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독립이사, 기타비상무이사,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동 순위 이사가 수인인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먼저 선임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의장은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환경·안전·보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환경안전보건담당 최고임원 또는 환경안전보건담당 최고임원이 지정하는 자를 출석시켜

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7조(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)

-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,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순위 집행임원인 사내이사, 기타비상무이사, 독립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동 순위 이사가 수인인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먼저 선임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 (소집)

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9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결원 또는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환경안전보건담당 최고임원이 의장에게 환경·안전·보건 관련 사항을 의안으로 한 이사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부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 (의사의 진행)

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,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2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3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1. 감사위원회
 2.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
 3. 내부거래위원회
 4. ESG위원회
 5. 보상위원회
 6.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독립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,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독립이사가 되도록 한다.
-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 제5항에 따르고, 본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14조 (부의 및 보고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
 - 주주총회의 소집
 -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재무제표의 승인
 -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공동대표의 결정
 -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
- 지점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- 신주발행사항의 결정, 실권주 처리
-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 발행
- 사채의 모집
-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
-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
-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
- 준비금의 자본전입
-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
- 기준일의 결정
-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2.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

-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-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
-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, 변경 또는 해약
-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주식배당
- 자본감소
- 주식의 소각
- 정관 변경안
- 이사의 보수안
-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·해임안
-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
-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및 주총 보고
-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

3.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(별첨 참조)

- 자산재평가
- 중요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출자
-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의 취득·처분·자금의 차입·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
-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

4.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

- 전략적 사업방향
- 업적 및 연간사업계획, 목표합의

5. 인사 관련 사항

-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
-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
- 환경안전보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 및 해임

6. 이사 및 이사회,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

-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
-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이사의 경업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

7.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사항

-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-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

8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, 제9조 제4항에 따른 환경·안전·보건 관련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2. 준법지원인의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
3.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관한 사항
4. 집행임원의 징계 결과

제15조 (위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안건,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17조 (사무국)

이사회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4 장 집행임원

제18조 (집행임원)

-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임원(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)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.

제19조 (상무회)

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상무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 (2001.4.2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3.3.10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4.3.17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6.3.9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6년 3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3.1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3.16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5.23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7.1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1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4.2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2.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5.11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1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6.3.3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독립이사에 대한 경과조치)

제5조(독립이사 명칭 개정 부분에 한정), 제7조(독립이사 명칭 개정 부분에 한정)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(별 첨) 이사회 상정기준

【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】

| 구 분 | 유 형 | 상정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투자 | 신규 및 증설 투자 | 건당 1,000 억원 이상 |
| 출자 | 출자 및 타회사 주식 취득 | 건당 1,000 억원 이상 |
| 자산의 취득 | 시설투자 및 출자를 제외한 자산 취득 | 건당 1,000 억원 이상 |
| 자산의 처분 | 주식의 매각 | 건당 1,000 억원 이상 |
| | 자산 및 영업의 일부 양도 | 건당 1,000 억원 이상 |
| 자금의 차입 | 사채 | 연간 한도 설정 및 증액 (매출채권 담보부 차입 제외) |
| | 차입 | |
|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| 자회사 및 기타 회사 | 건당 1,000 억원 이상 |